

원료 사용기준 [] 지정 [] 변경지정 신청서

※어두운 칸(■)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| | | | |
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접수번호 | 접수일시 | 처리기간 | 180일 |
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
| | | |
|-----|-------------------|--|
| 신청인 | 상호(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) | 등록번호(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 판매업자만 해당) 또는 법인번호 |
| | 성명 | |
| | 소재지 | 전화번호 |

신청 내용

| | |
|------|---|
| 분류 | [] 색소 [] 보존제 [] 자외선차단제 [] 기타 |
| 성분명 | |
| 사용기준 | 사용기준(최대배합함량, 필요시 최소 함량기준 포함) (변경지정 신청 시) 현행 사용기준 |
| 비고 | |

「화장품법」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료 사용기준의 (변경)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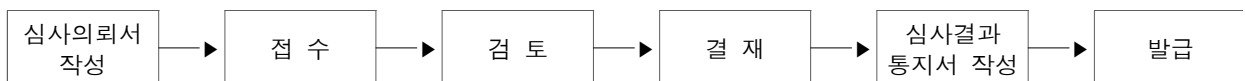
담당자 성명

담당자 전화번호

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

| | | |
|------|--|--|
| 첨부서류 | 1. 제출자료 전체의 요약본 2. 원료의 기원, 개발경위, 국내·외 사용기준 및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3. 원료의 특성에 관한 자료 4.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자료(유효성에 관한 자료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 다) 5. 원료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및 시험성적서 | 수수료 「화장품법 시행규 칙」 별표 9에서 정한 금액 |
|------|--|--|

처리 절차



신청인

식품의약품안전처장